

#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

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,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.

|  |  |
|--|--|
| 1. 공사내용  |  |
| 공사명  | 청주시 분평미평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  |
| 공사 장소(주소)  |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3   |
| 공사의 종류   | 공동주택 (V) 건축물( ) 도시철도( )  |
| 2.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 |  |
|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|
| 중계장치 설치장소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|
| 접지단자 위치  |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  |
|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 | 각 층의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(총용량4kW 이상, 교류 220V, 단자 3개 이상)  |
| 3. 공동주택(500세대 이상)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  |  |
|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  | 사이버 견본주택에 게시   |
|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 |  |
| ※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,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. |  |
| 4.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 |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 사본 1부 제공<br>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(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)<br>③ 건축물의 착공/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|
| 5.기타 합의사항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|

※ 건축주는 "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"의 제 35조~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※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[첨부]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.

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"전기통신사업법", "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"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.

2025년 01월 14일

|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구분  | 법인/단체명(상호)     | 대표자(성명)       |
| 건축주 | 청주글로벌          | 안경찬,전영수       |
| 대리인 | (주)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| 이유상<br>(인동의합) |

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

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 
한국전파진흥협회



# 상세 협의 결과

## 1.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

1. 옥상층: 101동, 103동, 105동, 106동, 108동, 109동, 110동

## 2. 중계장치 설치 위치

1. 옥상층: 101동, 103동, 105동, 106동, 108동, 109동, 110동  
2. 지하1층: 동통신실 8개소(101동, 103동, 104동, 105동, 106동, 108동, 109동, 110동)

## 3. 기타 협의사항

●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
- 건축주등\* 필수 보완사항 (홈페이지 "착공통보" 화면에 등록)

-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
-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
- ③ 착공예정일
- ④ 준공예정일
- ⑤ 공사요청일
- ⑥ 공사현장담당자 (이름, 연락처 등)

\*건축주등 : 건축주 외 건축사, 건설사, 통신설계사, 시행사,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

● 중계설비 설치시기 : 건축주 공사요청일 ~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

※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,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(최소5개월 소요)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
● 아래 <<주의사항>>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<주의사항>>

※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"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"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(건설사)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,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.

※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장치/옥외안테나 설치 시, 전원접지단자를 옥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